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의 유예기간 확대 》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47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제2210747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의 유예기간 확대 (안 제22조제2항제5호 단서 신설)	2

I.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제221074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6. 12.

다. 회 부 일 : 2025. 6.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계설비법」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 사정,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계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3개월로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상 영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피해를 완화하고, 기계설비 점검 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제5호 단서 신설).

3. 검토의견

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의 유예기간 확대

(안 제22조제2항제5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생략)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단서 신설>	5. ----- ----- ----- .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다.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소상공인 등인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 대하여는 ‘3개월’로 확대하려는 것임.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으로서 현행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살펴보면,

현행법 제21조¹⁾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자본금,

1) 「기계설비법」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7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7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을 말한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요건
1. 자본금	1억원 이상일 것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는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3.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 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나. 초음파유량계 다. 디지털압력계 라. 데이터기록계 마. 연소가스분석기 바. 건습구온도계(乾濕球溫度計) 사. 표준온도계(標準溫度計) 아. 적외선온도계 자. 디지털풍속계 차. 디지털풍압계 카. 교류전력측정계 타. 조도계 파. 회전계(R.P.M측정기) 하. 초음파두께측정기 거. 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너. 이산화탄소(CO ₂) 측정기 더. 일산화탄소(CO) 측정기 러. 미세먼지측정기 머. 누수탐지기 버. 배관 내시경카메라 서. 수질분석기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경영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위 표 제3호 각 목의 장비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22조제2항제5호2)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등록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현행법 제22조제2항제5호3))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4)에

2) 「기계설비법」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②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한 후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6.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3) 「기계설비법」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②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한 후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6.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

따른 소상공인 등이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등록 취소 시점을 ‘3개월이 지난 경우’로 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3⁵⁾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영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최대 180일까지 제재처분의 부과를 유예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 방향을 밝힌 바 있음.⁶⁾⁷⁾

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3(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6) 법제처 보도자료, “경제적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제재처분 부담 완화한다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일정기간 제재처분 유예로 소상공인의 재도약 적극 지원”, 2023.6.1., 법제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1.10. 참고

7) 「골재채취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의2(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법 제1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은 이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의 등록요건 미달에 대한 등록 취소와 관련해서도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처분의 유예기간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미달된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제공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유사한 취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⁸⁾

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1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골재채취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104호, 2024.7.22. 정부 제출)

현행	개정안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생략)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② ----- ----- ----- ----- -----, -----

이 있으며, 「골재채취법」의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정부 제출안과 같이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 기준으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업체 582개사 중 71.6%인 417개사⁹⁾가 소상공인¹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단서 신설> 6. 7. (생략)	----- -----. 1. ~ 4. (현행과 같음) 5. ----- -- 미달하게 된 -----.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7. (현행과 같음)
---	---

9) 성능점검실적 신고 업체 233개사 중 연간매출액 30억원 이하 68개사 + 실적 미신고 업체 349개사

10) 소상공인 요건: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①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일정 규모 이하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주된 업종 M.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평균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업체는 소기업에 해당

② 인력(상시 근로자수) 일정 규모 이하

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나) 가) 외의 업종 : 5명 미만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 72129)’으로 나)에 해당

※자료: 국토교통부

*주: 평균매출액등: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

추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91

(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u>평균매출액등</u> 30억원 이하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